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5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김성원·구자근·임이자

서지영 · 박충권 · 이인선

고동진 • 박성훈 • 이종배
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·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전 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·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,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·고립 상태에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.

이에 위기아동·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, 지방자치 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위기 아동·청년에 대한 공공 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설치·운영할 수 있다"를 "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지정·위탁할 수 있다"를 "지정·위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	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		
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	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		
제10조(도움필요 아동·청년의	제10조(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		
발굴) ① (생 략)	발굴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	②		
아동・청년의 발굴・상담・신			
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렁		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,			
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			
원스톱 창구를 <u>설치·운영할</u>	<u>설</u> 치 • 운영하		
<u>수 있다</u> .	<u>여야 한다</u> .		
제22조(전담조직의 지정・위탁)	제22조(전담조직의 지정·위탁)		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	①		
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			
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			
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			
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			
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전			
담조직으로 <u>지정·위탁할 수</u>	<u>지정·위탁하여야 한</u>		
<u>있다</u> .	<u>다</u> .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